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

그동안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정하여 수질을 관리하였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4대강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어려워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는 지난 '02년에 특별법을 제정해 오염총량제를 의무시행하고 있다. 시장·군수의 자율적 판단 및 신청에 의해 임의제로 시행하던 한강수계도 지난 9월말 환경부와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의 시장·군수 및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이 모여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안에 한강수계법을 개정해 한강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와 이미 지난해부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광주시를 제외한 가평,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등 한강수계 5개 시, 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

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역·기초지자체별,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유역 관리로 알려져 있다. 관리청(광역시·시·군, 지방환경관서)은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게되며, 명령권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내 이행했으나 검사결과가 계속 초과하는 때에 조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조업정지, 폐쇄명령 위반한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염총량관리제는 규제만을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아니라 지역개발계획,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이에 본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 총량제 실시에 따른 기업체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편집부〉

| 글 쓰는 순서 |

Part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장 박재성)

Part 2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기업체 대응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